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428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4281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0가단604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권원용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로

담당변호사 김홍식

변론종결 2024. 4. 25.

판결선고 2024. 6. 27.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0가단6040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5.에 체결된 2019. 1. 27.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6,009,41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86,009,4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5,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5.에 체결된 2019. 1. 27.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10. 접수 제59780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 중 C 소유 3/7 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으로, 위 1의 가.항 및 나. 피고는 원고에게 86,047,1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184430호 대여금(약정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2. ‘C은 원고에게 17,72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2008. 12. 31.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C은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7631)은 2020. 5. 15.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C은 원고에게 17,698,024원 및 그 중 17,400,000원에 대하여 2008. 3. 2.부터 2008. 12. 31.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C은 대법원에 상고(2020다234347)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3. C의 상고를 기각하여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C의 남편인 망 D은 2019. 1.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C, 자녀인 피고, E이 있다(상속지분 C 3/7, 나머지 상속인들 각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D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이다.

다. C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9. 6. 5.경 채무자인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5. 접수 제58341호로 2019. 1. 2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상속지분 C 3/7, 나머지 상속인들 각 2/7)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피고를 비롯한 망 D의 상속인들은 2019. 6. 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1)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9. 6. 10. 접수 제5978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이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 소유 지분을 피고에게 처분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또한 주위적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물반환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 소유 지분 3/7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물반환이 불가할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써 피보전채권 상당액인 86,047,1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부동산만이 C이 상속받을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으므로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부동산들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을 대신 변제하고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장례비를 부담하는 등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기여분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C의 사해의사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 대하여 대여금 또는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여부(C이 무자력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내지 12, 18 내지 22, 2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인 2019. 6. 5.경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합계는 아래와 같다.

가) 적극재산 합계 : 425,098,071원(=364,598,605원+47,108원+60,452,358원)

① 이 사건 부동산, G의 C 지분가액 : 364,598,605원2)

② C 명의 예금 잔액 : 47,108원(=26,660원+4원+20,444원)

③ D 명의 예금 중 C 상속분 : 60,452,358원3)

나) 소극재산 합계 : 500,692,310원(=65,589,496원+140,000,000원+161,488,692원+47,160,829원+17,309,850원+26,286,301원+42,857,142원)

① 2019. 6. 5. 기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무 : 65,589,496원4) ② H, I로부터 각 편취한

금원에 대한 배상채무 : 총 140,000,000원(=H 50,000,000원 + I 90,000,000원,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의 소멸시

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데(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피고가 위 각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고소인들이 C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실에 비추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5)} }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추심금 채무 : 161,488,692원

④ J 주식회사에 대한 추심금 채무 : 47,160,829원

⑤ K 주식회사에 대한 추심금 채무 : 17,309,850원

⑥ 주식회사 L에 대한 판결금 채무 : 26,286,301원(=21,078,977원 및 그 중 3,654,382원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2019. 6. 5.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5,107,324원의 합계)

⑦ 임차인 M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 42,857,142원(=1억 원×상속분 3/7)

3) 피고의 기여분 주장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6호증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 D의 생전에 일정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 D의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또는, 적어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C 및 피고의 사해의사

1) 관련법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및 전득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점, ② C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③ C과 피고는 모녀관계에 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또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25호증,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M는 2017. 11. 10.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주택부분을 임차보증금 1억 원(M 부담액 19,250,000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액 80,75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2. 11.부터 2019. 12. 10.까지로 하여 임차하였고, 2017. 11. 14.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② M의 배우자인 N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17.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

③ 피고와 M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9. 11. 11.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 피고는 M에게 같은 날 10,000,000원, 2020. 2. 26. 9,250,000원 등 합계 19,250,000원을 반환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20. 2. 26. 나머지 80,750,000원을 반환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M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2017. 12. 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였고, 사해행위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수익자인 피고가 위 임차권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이 된다. 따라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관련 법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 중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공동담보가액 : 410,353,027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한국부동산원 지역별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24. 4. 25.을 기준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057,490,398원(=2021. 8.경 시가 1,212,750,000원 × 2024. 3.경 실거래가 지수 122.6 / 2021. 8.경 실거래가 지수 140.6)이고, M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액인 1억 원을 공제하면 957,490,398원이다. 따라서 그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C의 상속지분의 가액은 410,353,027원(=957,490,398원 × 3/7)이다.

나) 피보전채권액 : 86,009,414원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인 2024. 4. 25.을 기준으로 하는 피보전채권액은 86,009,414원(= 17,698,024원 + 17,400,000원에 대하여 2008. 3. 2.부터 2008. 12. 31.까지 연 19%의 지연이자 2,762,547원 + 17,400,000원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8. 2. 7.까지 연 25%의 지연이자 39,602,876원 + 17,400,000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24. 4. 25.까지 연 24%의 지연이자 25,945,967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2019. 6. 5.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의 피보전채권액 86,009,41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써 86,009,4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재윤, 판사 김우정, 판사 차은경

별지

- 1) 제1심법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된 피고, C, E의각 인감도장의 인감증명서 발급날짜가 2019. 6. 5.인데, 이러한 점에다가 갑 제16호증을 보태어 보면,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9. 6. 5.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D의 사망일인 2019. 1. 27.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2) = (8억 4,620만 원 + 4,530,080원) × C 지분 3/7,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2019. 1.경 시가 기준.
- 3) = {1억 원 + 462,335원 + 39,462,262원 + 1,130,906원(=1,010.64달러 × 2019.1.28.자 환율 1,119원)} × 3/7
- 4) = 17,698,024원 + 17,400,000원에 대하여 2008.3.2.부터 2008.12.31.까지 연 19%의 지연이자 2,762,547원(원 단위 미만 버림,이하 같다) + 17,400,000원에 대하여 2009.1.1.부터 2018.2.7.까지 연 25%의 지연이자 39,602,876원 + 17,400,000원에 대하여 2018.2.8.부터 2019.6.5.까지 연 24%의 지연이자 합계 5,526,049원
- 5)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